

1

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 급증

최근 대학생을 상대로 강의실,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**자격증 교재, 어학교재(인터넷 강의·CD 포함)**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방문판매

▶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

캠퍼스 방문판매의 문제점

▶ 방문판매원은 상품에 대한 구매의사나 지식이 없는 대학생 소비자를 방문하여 구입을 권유하는 만큼, 총동구매나 기만적인 상술, 허위·과장된 설명, 강압적인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킴



2

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사례

캠퍼스, 강의실에서 발생하는 **방문판매 피해**는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**불법**인 경우가 많습니다.

① 허위·과장 광고 혹은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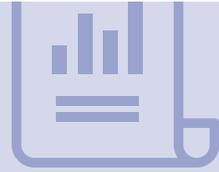
- 대학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'IT전자출판 제공과정' 교육을 신청했는데,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자마자 교육비 30여만원을 내라고 독촉하고 보호자에게도 수시로 연락해서 납부를 독촉함
- 강의실에서 수업 종료 직후 장학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장학프로그램이라며 4년 간 모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으나, 홈페이지 관리비 명목의 비용을 납부 하라고 함

②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

- 이OO(만18세, 미성년자)은 강의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무료교재라고 소개하여 신청을 하게됨. 이OO은 부모 동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2주 후 방문판매원에게 이용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, 청약철회기간(14일)이 지났으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거절하고 대금을 납부 하라는 독촉을 시작함

③ 방문판매원의 성명 등 정보 미제공

- 김OO(만19세)는 학과 과대표 안내를 받고 동기들과 빈 강의실에 모였는데, 한 남자가 학습교재 홍보를 함. 이 남자가 방문판매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학교 관계자로 생각함. 설명이 끝난 후 작성한 신청서에도 방문판매원 성명,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



3

방문판매원의 상술

캠퍼스에 돌아다니며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취업고민과 진로고민에 빠져있는 **대학생들을 유혹하는 다양한 상술**을 구사합니다.

- ▶ 100% 취업이 보장되는 교재라고 허위·과장하여 설명합니다.
- ▶ '무료', '특별과정 신청' 이라고 허위 설명하면서 신청서(계약서)에 서명할 것을 권유합니다.
- ▶ 본인이 방문판매원이라든가 이름, 사업자 명칭 등을 밝히지 않습니다.
- ▶ 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(청약철회 기간 14일)이 지난 후에 돈을 내라고 연락합니다.

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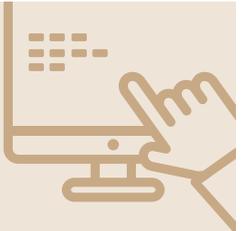
스스로 계약 취소하는 방법

캠퍼스에서 **불법 방문판매**로 구입한 상품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**조건 없이 즉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**할 수 있습니다.

※법률용어로는 '청약철회'라고 하지요!

청약철회

- ▶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한 후 일정기간을 냉정하게 다시 생각 (cooling off)할 수 있도록 하여, 기만적, 강요적 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



개강초 3~4월에 피해 집중

대학생 여러분,
캠퍼스 불법
방문판매 피해,
주의하세요!



소비자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



첫째,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세요!

국번없이 1372 ▷ 품목별 번호 선택



둘째,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

인터넷상담 하세요!

www.1372.go.kr 홈페이지 ▷ 상담신청



관련문의 |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(051) 888-2141~3

대학생 방문판매 피해 예방법

- 1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(14일 이내)
인터넷 우체국 (www.epost.go.kr) ▷ 부가우편서비스 ▷ 내용증명
- 2 1372 소비자상담센터
☎ 국번없이 1372 🌐 www.1372.go.kr
- 3 방문판매 사업자 정보확인
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 ▷ 사업자정보공개



5

청약철회 방법

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때문에 청약철회를 하려면 **14일 이내**에 서면(편지)으로 사업자(방문판매원)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. 서면(편지)은 **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**합니다.

14일 이내 계산하기!

- ▶ 계약서를 받은 경우
 -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,
 - 2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을 받은 날이 늦어지는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,
 - ▶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,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,
 - ▶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,
 - ▶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방해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!
- ※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어요!



6

내용증명 우편 발송 방법

-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을 청약철회 할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사업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방문판매 사업자 중에는 계약을 취소해 주지 않으려고,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보낸 편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

내용증명 우편제도

- ▶ 내용증명 우편은 내가 언제,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
- ▶ 보내는 방법은, 보내려는 문서를 3부 작성(복사)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. 그러면 사업자에게 1부 발송하고, 1부는 발신자(소비자)가 갖고,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
- ▶ 인터넷 우체국 우편서비스(http://service.epost.go.kr)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송 가능



개강초 3~4월에 피해 집중

대학생 여러분,
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피해,
주의하세요!

